

제천시 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259 |
|----------|------|

제출년월일 : 2008년 5월 일
제 출 자 : 제 천 시 장

1. 제정이유

노동부산하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내부방침으로 2009년 소도시 8개 캠퍼스에 대한 운영 평가 후 기능전환 및 폐교를 할 계획에 있어 제천캠퍼스의 폐교를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대학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2조)

1.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2.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교육여건 개선사업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위원회 구성(안 제5조)

1.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은 의회 의원 2명, 공무원 3명, 학장 추천 3명, 시장추천 2명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함

4. 의안전문 : 불 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6. 관계법령 : 불 임(기능대학법)

불임 1. 의안전문 1부.
2. 관계법령 1부.
3.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제천시 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능대학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의거 한국폴리텍IV대학 제천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행·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대학 시설투자 및 개선사업
2.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학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학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대학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천시 공무원 3명
 2. 제천시의회 의원 2명
 3. 학장이 추천하는 자 3명(교수 2명, 학부모 1명)
 4. 그 밖에 기능대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자가 되며,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학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지원사업 교부신청서 (제3조관련)

| | | | |
|---|-----------------------|---------|-------|
| 신청학교명 | | 대 표 자 | |
| 소재지 | | | |
| 사업명 | | | |
| 사업의 목적 | | | |
| 사업의 소요경비 | | | |
| 총사업비(원) | 시비보조(원) | 자체부담(원) | 기타(원) |
| | | | |
| 사업의 기간 | 200 . . . ~ 200 . . . | | |
| 사업내용 | | | |
| <p>「제천시 한국폴리텍IV대학 제천캠퍼스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p>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자 : (인) | | | |
| <p>제천시장 귀하</p> <p>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지원사업신청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별지로 작성해야함.</p> | | | |

관계 법령

기능대학법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23호]

第16條 (學生 및 訓練生에 대한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技能大學의 多技能技術者課程의 學生 및 職業訓練課程의 訓練生에 대하여 그 在學期間중의 教育·訓練에 필요한 費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 (훈련시설·장비 등에 대한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기능대학 설립·경영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학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16조의3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능대학의 설립·경영자(공공기관이 설립한 학교법인에 한한다)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제천시 공고 제 2008 - 531

제천시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3 . 25

제 천 시 장

제천시 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례명 : 제천시 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노동부산하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내부방침으로 2009년 소도시 8개 캠퍼스에 대한 운영 평가 후 기능전환 및 폐교를 할 계획에 있어 제천캠퍼스의 폐교를 방지 및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대학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사업의 범위(안 제2조)
 1. 특성화 대학 유치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기능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4조)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 위원회 구성(안 제5조)

1.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3. 위원은 의원 2명, 공무원 3명, 학교장 추천 3명, 시장추천 2명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함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4월 15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지역경제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066, FAX 641 - 5079 담당자 : 정홍택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지방행정주 시보 | | 지역경제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행정주사 | | | | | | |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공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1.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지원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08-531호

3. 공고기간 : 2008. 3. 25. ~ 4. 15.(20일)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홈페이지(입법예고)

5. 공고내용 : 별도붙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187명

○ 의견제시자 : 없음

○ 내부검토의견

- 제천시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지원 조례(안)제2조1호 “특성화 학교 유치에 필요한사업”을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학교 시설 투자 및 개선사업”으로

- 제천시한국폴리텍IV 대학 제천캠퍼스지원 조례(안)제5조제3항 1호 “공무원 3명(담당부서장 및 본부장, 예산부서장)”를 “제천시 공무원3명”으로 변경

불임 : 공고안 1부.(별지) 끝.